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
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국민권익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함)이 일부개정되어 2020년 6월 11일에 시행됨에 따라 조사결과 통보 등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공공재정환수법”이라 함)이 제정되어 2020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민원의 접수기관 판단기준 정비 (안 제12조)

- 1)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모든 민원을 위원회에서 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 해석상 논란이 발생함
- 2) 민원인이 타 기관을 지정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이 접수된 기관을 명확하게 하려고 함

나. 위원회 의결사항 정비 (안 제16조)

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른 신고사항 등을 위원회 의결사항에 추가함
다. 권고 또는 의견표명시 의견제출 방식 확대 (안 제49조)

- 1) 위원회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진술 및 회의출석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「행정절차법」상의 권리를 보장하여 왔음
- 2) 다만 법 및 시행령에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회의출석만 규정되어 있어, 서면진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고 함

라. 조사결과 통보 관련 규정 정비 (안 제61조)

신고사항을 직접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직접 이첩받은 기관 외에 이첩 등을 받은 조사기관도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법 제60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마.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(안 제77조, 별표 2)

보상대상가액의 다과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던 부패신고 보상금을 정률로 지급하도록 그 기준을 개선하여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수준을 확대하고자 함

바.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(안 제88조)

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였을 경우 대통령 또는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법 제77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제2호 중 “재분류”를 “재분류 (민원인이 위원회 외의 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)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3.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

에 따른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

제4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법 제48조제1항”을 “법 제48조제2항”으로 한다.

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기간 내에 서면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조사기관”을 “조사기관(법 제60조제2

항의 조사기관을 의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으로, “신고사항을 위원회로부터 직접 이첩 받은 기관이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·재이첩, 감사요구, 송치,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

제7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, 산정된”을 “산정된”으로 한다.

① 보상금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%를 지급한다.

제88조의 제목 “(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)”을 “(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)”으로 한다.

별표 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패행위 조사결과 등의 통보 적용례)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제3조(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
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77조제1항·제3항의 개정규정에도
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) ① (생략) ②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(생략) 2.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,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류 및 <u>재분류</u> 3. ~ 6. (생략) ③ ~ ⑤ (생략) 제16조(위원회 의결 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1. ~ 8의2. (생략) <u><신설></u> 9. (생략)	제12조(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 <u>재분류 (민원인이 위원회 외의 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)</u> 3. ~ 6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16조(위원회 의결 등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8의2. (현행과 같음) 8의3. 「 <u>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</u> 」에 따른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9. (현행과 같음)

제49조(의견제출 기회 부여)
<신 설>

제61조(조사결과 등의 통보) ①
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사기관이 감사·수사 또는 조사
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
에는 신고사항을 위원회로부터
직접 이첩 받은 기관이 다음 각
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

제49조(의견제출 기회의 부여) ①
권익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
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
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이해
관계인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
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
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
기간 내에 서면의견을 제출하지
아니하거나 출석의사를 통지하
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
로 본다.

제61조(조사결과 등의 통보) ① -
----- 조
사기관(법 제60조제2항의 조사
기관을 의미한다. 이하 이 조에
서 같다)-- 다음 -----

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5. (생략) ② (생략) 제77조(보상금의 결정) ① <u>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.</u> ② (생략) ③ <u>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,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</u> 제88조(<u>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</u>) (생략)	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·재이첩, 감사요구, 송치,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</u>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77조(보상금의 결정) ① <u>보상금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%를 지급한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산정된</u> ----- -----. 제88조(<u>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</u>) (현행과 같음)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0 - 7145